

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3-15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‘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’의 위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‘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’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27조의2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「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」 운영 계획(안)(어르신동행과 100194, ‘23.11.8.)

2) 추진 필요성

-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 및 운영으로 ‘효도숙식경로당’ 대상 효율적인 인력·시설 관리 및 사업 추진의 능률성 확보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‘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’ 운영 및 시설관리

- 1) 효도숙식경로당 운영 및 시설·안전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
- 2)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인력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
- 3) 돌봄 서비스제공, 돌봄 프로그램 기획·운영에 관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1) 소재지: 마포구 서강로1길 30
- 2) 건물규모: 지상1층~5층(연면적 1047.08㎡)
- 3) 시설규모: 지상2층(258.40㎡), 지상3층(257.66㎡)
- 4) 입주정원: 16명(남 8명, 여 8명)
- 5) 층별현황

구분	면적(㎡)	시설물 현황	비고
합계	1,047.08		
5층	30.93	옥상	
4층	238.16	충전데이케어센터	
3층	257.66	효도숙식경로당 사업대상지	· 각 층별 개인침실 8호 · 공용 주방, 거실, 화장실, 세탁실
2층	258.40	효도숙식경로당 사업대상지	
1층	261.93	경로당, 사무실	

6) 기타사항: 2024. 2. 리모델링 공사 준공 예정

마. 위탁기간: 3년(2024. 4. ~ 2027. 3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1) 소요예산: 53,786천원(구비 100%)
- 2) 산출근거 ※ 인건비: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참고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53,786		
인건비	30,186	· 사회복지사 인건비 3,354,000원*1명*9개월=30,186,000원	
사업비	7,200	· 사업비 100,000원*2시간*4회*9개월=7,200,000원	
운영비	16,400	· 일반운영비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70,000원*5명*3회=1,050,000원 업무추진비 50,000원*9개월=450,000원 사무관리비 100,000원*9개월=900,000원 · 시설운영비 물품(기구)구입비 5,000,000원 공공요금 1,000,000원*9개월=9,000,000원	

※ 리모델링 공사 일정을 감안, 2024년 사업비는 9개월 기준 산출, 차년도부터 12개월 기준 산출 및 예산 편성 예정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2)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자. 추진일정

- 1) '23. 11. ~ '24. 2. :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리모델링 공사
- 2) '24. 1. ~ 2. : 위탁기관 선정 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, 위탁 협약 체결
- 3) '24. 2. ~ 3. :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, 입주계약 체결
- 4) '24. 4. :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개소·입주, 위탁운영 개시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시설의 운영)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